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정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2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발 의 자: 유정인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경기문, 구미경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남창진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윤기섭, 윤영희, 이병윤, 이봉준, 이영실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장태용, 정준호, 최민규, 최진혁, 허·훈, 황유정 의원(3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의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도 달라진 바,
-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
 - 조항 변경: 안 제10조제1항, 제34조제6호, 제35조, 제38조제1항제3호, 별지 제6호 서식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5호까지”를 “제5호까지 및 제7호”로 한다.

제34조제6호 중 “법 제74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74조제4항제1호”로 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4조제2항제2호”를 “법 제74조제4항제2호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3호 중 “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”을 “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4조”를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<u>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</u>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34조(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)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·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<u>법 제74조제2항제1호</u>를 준용하며,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.</p> <p>제35조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 <u>법 제74조제2항제2호</u>에 따</p>	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----- <u>제5호까지 및 제7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4조(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<u>법 제74조제4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5조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 <u>법 제74조제4항제2호</u>-----</p>

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·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제38조(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)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, 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3.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

4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) 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-----

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
[별지 제6호서식]		[별지 제6호서식]																	
금품·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		금품·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																	
신고인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성명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생년월일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/tr> <tr> <td>주소</td> <td></td> <td>전화번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성명		생년월일		주소		전화번호		신고인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성명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생년월일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</td> </tr> <tr> <td>주소</td> <td></td> <td>전화번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성명		생년월일		주소		전화번호	
성명		생년월일																	
주소		전화번호																	
성명		생년월일																	
주소		전화번호																	
신고일자	년 월 일	신고일자	년 월 일																
신고내용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행위자(업체명) (주소)</td> <td style="width: 80%;"></td> </tr> <tr> <td>유형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행위자(업체명) (주소)		유형		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		신고내용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행위자(업체명) (주소)</td> <td style="width: 80%;"></td> </tr> <tr> <td>유형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행위자(업체명) (주소)		유형		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					
행위자(업체명) (주소)																			
유형																			
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																			
행위자(업체명) (주소)																			
유형																			
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																			
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	[입금은행 및 계좌번호]	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	[입금은행 및 계좌번호]																
<p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4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9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대표 (서명 또는 인)</p> <p>서울특별시장 귀하</p>		<p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9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대표 (서명 또는 인)</p> <p>서울특별시장 귀하</p>																	
제출서류	1.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.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(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로 한정한다) 1부.	제출서류	1.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.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(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로 한정한다) 1부.																
수수료 없음		수수료 없음																	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		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																	